



-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수수 관련- 비리행위자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(안) 보고

□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14. 2. 24. ~ 4. 2.
- 비리유형 : 금품수수
- 조사자 : 감사팀장 외 1명

□ 조사결과 위법·부당내용

- 비리행위자 : ○○○○ ○○○
- 위법·부당내용 : 금품수수
- 위반 및 처벌규정
 - 위반규정
 -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8조(부당이익 수수금지)
 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15조(금품 등의 수수 제한)
 - 징계 및 처벌규정
 -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
 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36조(징계)

□ 처분계획(안)

- 신분상 처분계획
 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15조(금품 등의 수수제한)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·부동산·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
 - ○○○차장은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8조(부당이득 수수금지)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5조(금품 등의 수수제한)를 위반하였음.
 -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에 따라 감봉 처분을 요구